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운영 및 검사 진행 현황
보고 의무화〉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61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운영 및 검사 진행 현황 보고 의무화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4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운영 및 검사 진행 현황 보고 의무화

개정안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진행 중인 토양오염검사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운영 및 진행 중인 토양오염검사 현황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5항, 안 제26조의3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 ④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진행 중인 토양오염검사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u>설치</u> <u>현황</u>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 ----- ----- ----- ----- 1. ----- <u>설치</u> <u>운영 현황</u>

현행	개정안
2. (생략) <u><신설></u>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행 중인 토양오염검사 현황
②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¹⁾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①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②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③ 송유관시설 등이 포함²⁾됨.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현행법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토양오염검사 및 결과 통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제13조³⁾), 시장 등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과 토양오염검사 결과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6조의3⁴⁾).

그런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이행 여부 등 주요 지표 관리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단위의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최근 5년(2020~2024년)간 ‘토양오염우려지역 권역별 순회 조사 결

3)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4)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에 따르면, 휴·폐업 주유소⁵⁾ 212곳 중 33곳(15.6%),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유소 351곳 중 84곳(23.9%)에서 토양·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였음.

【 토양오염우려지역 권역별 순회 조사 결과 】

연도	조사 건수		토양·지하수 오염 발생 건수	
	휴·폐업 주유소	노후 주유소	휴·폐업 주유소	노후 주유소
2020년	-	98건	-	38건
2021년	72건	86건	7건	11건
2022년	80건	82건	17건	21건
2023년	2건	58건	1건	7건
2024년	58건	27건	8건	7건
합계	212건	351건	33건	84건

주) 동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님.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휴·폐업 시설의 장기 방치에 따른 사후 관리 미비와 노후 시설의 부식 등 물리적 파손이 토양·지하수 오염의 원인임을 방증함.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이러한 위험 징후를 중앙 부처가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 입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염 위험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토양오염검사⁶⁾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

5) 석유류 저장시설인 주유소는 대부분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이므로,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관리됨.

로 실시되는 토양오염도검사는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부터 분석, 결과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가 통상 4주⁷⁾ 이내에 완료됨.

이처럼 짧은 검사 기간을 고려할 때,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수시로
변동되는 ‘진행 중인 현황’을 시장 등에 통보하고, 시장 등이 이를 중
합하여 기후에너지부환경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소지가 있는바,

법정 기한 내에 토양오염검사 실시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무 위반 현황’을 기후에너지부환경장관에 보고하는 방
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폐쇄 등
을 확인하기 위한 ‘운영 현황’은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필
수 정보로서 보고 항목 확대가 필요하지만, ‘진행 중인 현황’을 통보·
보고하는 것은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548

6)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7) 누출검사의 경우 현장조사 후 결과통보가 이루어지므로 토양오염도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짧음.